

## <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칙 >

### 제1장 총 칙

#### 제1조(명칭)

본 학생회는 “중앙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(이하 본회)”라고 한다.

#### 제2조(목적)

본회는 학생사회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고 학생회원간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며 대학의 진보와 자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3조(구성)

본회는 학생총회, 단과대학생대표자회의, 단과대운영위원회, 집행국, 학과학생회로 구성한다.

#### 제4조(권한)

- ① 본회는 회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.
- ② 본회는 회원들의 합의와 동의의 과정 속에서 사업을 집행할 권리를 가진다.

#### 제5조(의결)

- ① 본회의 의사결정권은 학생총회, 단과대학생대표자회의, 단과대운영위원회,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 순서로 한다.
- ② 학생회장은 본회 및 학내외 위기상황 및 이에 준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한하여 비상직권이 허용된다.

### 제2장 회 원

#### 제6조(자격)

본회의 회원은 중앙대학교 사범대학의 학사과정 재적생으로 한다.

#### 제7조(권리)

- ①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
- ② 본회의 회원은 제반의 활동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- ③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의 권리를 보장받는다.
- ④ 휴학생은 다음에 명시된 회원의 권리를 제한한다.
  1. 선거권 및 피선거권
  2. 각종 투표권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대한 참여권
  3. 본회의 회비 및 지원금으로 참가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제공되는 행사에 대한 참여권

#### 제8조(의무)

- ① 본회의 회원은 학생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.
- 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지닌다.

### 제3장 학생총회

#### 제9조 (지위)

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.

#### 제10조(구성)

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.

#### 제11조(의장)

학생총회의 의장은 본회의 학생회장으로 한다. 단, 학생회장 탄핵 소추 시에는 단과대운영위원회 위원 중 각과 학생회장 1인이 의장직을 수행한다.

#### 제12조(소집)

학생총회의 의장은 다음과 같은 요구가 있을 시 24시간 이내에 소집 이유를 명시하여 공고를 내고,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해야한다. 단, 긴급회의를 요하는 경우 의장은 1주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해야한다.

1. 본회의 회원 1/10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
2. 단과대운영위원회 및 단과대학생대표자회의 요구가 있을 시

#### 제13조(의결)

학생총회는 재적회원 1/4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# 제14조(권한)

- ① 학생총회는 학생회 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.
- ② 학생총회는 정.부학생회장 또는 각 집행국장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.

#### 제15조(탄핵)

- ① 학생총회는 재적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정.부학생회장을 탄핵할 수 있다.
- ② 학생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본회의 각 집행국장을 탄핵할 수 있다.

#### 제16조(회의운영)

학생총회의 회의 운영 방식은 회의 소집공고 이후 단과대운영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결정한 후 개최 전 공표한다.

### 제4장 단과대학생대표자회의

#### 제17조(지위)

단과대학생대표자회의(이하 단학대회)는 학생총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최고 결정권을 위임받아 활동한다.

#### 제18조(구성)

- ① 단학대회는 회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사범대학 정.부학생회장, 각과 정.부학생회장, 각과 학년 정대표로 구성한다.
- ② 대표자 궐위(사고)시 재적 대표자에서 제하고 발언권만을 가지는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.
- ③ 대표자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상급단위 대표자의 동의를 얻어 그 단위 회원에게 위임장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

#### 제19조(의장)

- ① 단학대회의 의장은 본회의 학생회장으로 한다.
- ② 의장 결위(사고)시 부학생회장이 역할을 대리한다.
- ③ 의장이 공석일 경우 비상대책위원장이 역할을 대리한다.

#### 제20조(소집)

- ① 정기 단학대회는 매학기 중에 의장이 소집해야 한다.
- ② 임시 단학대회는 운영위원회의 2/3 이상의 동의를 거치거나, 회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즉시 소집한다.
- ③ 정기 단학대회는 최소 7일 전에 공고해야 하며, 임시 단학대회는 최소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.

#### 제21조(개회 및 의결)

단학대회는 재적 대표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# 제22조(업무 및 권한)

단학대회는 학생회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본회의 제반 중요한 사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학생대표자회의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.

- ① 학생총회 소집 요구권
- ② 본회 활동의 총노선과 운영위원회 및 각 집행부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권
- ③ 학생회 예산 심의 및 결산 감사권
- ④ 학생회칙 개정과 발의 및 의결권
- ⑤ 본회 전반에 대한 제정 및 의결권
- ⑥ 기타 단학대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
- ⑦ 본회의 각 집행국장의 탄핵권

#### 제23조(탄핵)

단학대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의원 2/3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각 집행국장을 탄핵할 수 있다

#### 제24조(안건상정)

- ① 의장 또는 단과대운영위원회는 최소 3일전까지 안건을 상정한다.
- ② 다음 기준을 충족할 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.
  1. 의장의 발의
  2. 단과대 운영위원 1/3 이상의 발의
  3. 단학대회 재적의원 1/4 이상의 발의

#### 제25조(회의운영)

단학대회의 회의 운영 방식은 회의 소집공고 이후 단과대운영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결정한 후 개회 전 공표한다.

#### 제26조(회의록)

- ① 단학대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회의록에 대회의 진행과정과 그 결과를 기재한다. 회의록의 작성은 본회의 집행국장 또는 집행국원 중 2인이 작성하며 단학대회 폐회 이후 취합한다.

## 제5장 단과대운영위원회

### 제27조(지위)

단과대운영위원회(이하 단운위)는 단학대회로부터 위임받은 상설적 최고 의결기구이다.

### 제28조(구성)

단운위는 본회의 정.부학생회장과 각과 정.부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.

### 제29조(소집)

- ① 정기 회의는 매주 1회 본회의 정.부학생회장이 소집한다.
- ② 임시 회의는 필요에 따라 본회의 정.부학생회장이 소집한다.

### 제30조(개회 및 의결)

단운위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 제31조(업무 및 권한)

단운위는 본회 회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본회의 제반 중요한 사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상설적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.

- ① 학생총회의 소집 요구권
- ② 단학대회의 소집 요구권
- ③ 각 집행국장의 인준, 탄핵 및 참석 요구권
- ④ 각 집행국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
- ⑤ 특별기구 구성권
- ⑥ 학생회 예산 편성 및 결산 동의권
- ⑦ 학생회칙 개정 발의권
- ⑧ 학교당국에 대한 교섭권
- ⑨ 기타 단운위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권

### 제32조(탄핵)

단운위는 운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각 집행국장을 탄핵할 수 있다.

## 제6장 정.부학생회장

### 제33조(지위)

정.부학생회장은 학생총회, 단학대회,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.

### 제34조(선출)

정.부학생회장은 본회의 회원 가운데 3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로서 전체회원의 과반수의 투표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.

### 제35조(임기)

정.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당선 연도 다음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.

### 제36조(신분보장)

정.부학생회장은 사퇴 또는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일체의 신분이 보장된다.

#### 제37조(업무 및 권한)

- ① 정.부학생회장은 본회의 사업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진다.
- ② 학생회장은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의 운영위원이 된다.
- ③ 정.부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외 연합기구의 대의원이 될 수 있다.
- ④ 학생회장은 본회의 학생총회, 단학대회,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- ⑤ 정.부학생회장은 각 집행국장과 집행국원에 대한 임면권을 갖는다.
- ⑥ 정.부학생회장은 집행국 업무를 총괄한다.

### 제7장 집행국

#### 제38조(지위)

집행국은 단운위의 결의 사항에 입각하여 본 학생회 사업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상설적 집행단위이자 정책단위이다.

#### 제39조(구성)

- ① 집행국의 구성은 당해 학생회장이 단운위의 2/3이상 동의를 얻어 구성하여 단운위에서 인준을 받는다.
- ② 각 집행국장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집행국원을 둘 수 있다.

#### 제40조(선출)

- ① 집행국장은 집행국의 구성원으로, 학생회장이 임명한다.
- ② 집행국장은 단운위에서 인준을 받는다.
- ③ 집행국원은 각 집행국장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학생회장이 임명한다.

#### 제41조(특별부서)

학생회장은 단운위의 동의를 거쳐 상설적 집행국 이외의 집행부서와 특별 부서를 둘 수 있다.

### 제8장 학과학생회

#### 제42조(구성 및 운영)

학과학생회의 구성 및 운영은 학과별 학생회칙에 따른다.

### 제9장 선거

#### 제43조(원칙)

- ① 본회의 정.부학생회장 선거는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한다.
- ② 보통선거, 평등선거, 직접선거, 비밀선거의 원칙에 의해 실시한다.
- ③ 선거진행은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칙과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진행한다.
- ④ 그 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단과대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.

#### 제44조(시기)

매 학년도 정.부학생회장 선거는 직전 학년도 11월 중에 실시한다.

#### 제45조(유권자)

- ① 유권자는 현재 재학 중인 본회의 회원으로 한다.
- ② 다음 연도 2월 졸업예정자는 기본적으로 유권자로 간주하지 않는다. 단, 다음 연도 2월 졸업이 불확실한 자는 유권자로 인정하여 투표가 가능하다.

#### 제46조(단과대선거관리위원회)

단과대선거관리위원회는 단운위의 협의로 구성한다.

#### 제47조(선거공고)

단과대선거관리위원회의 협의로 공고한다.

#### 제48조(후보등록)

후보자는 후보등록 마감 직전까지 각 과 회원 1/4 이상의 추천을 받아 단과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자로 한다.

#### 제49조(당선)

당선자는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 투표와 유효표 수의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.

#### 제50조(재선거)

- ① 최다득표자가 유효표 수의 과반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결선 투표를 한다.
- ② 득표 차의 수가 전체 투표의 무효표 수를 초과하지 못할 경우 단과대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투표를 실시한다.
- ③ 투표율이 유권자의 50% 이하일 경우에는 사범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장투표를 실시한다.
- ④ 투표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유권자의 50% 이하일 경우에는 단과대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한다.

#### 제51조(보궐선거)

- ① 학생회장 궐위 시 잔임 기간이 150일 이상일 경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150일 미만일 경우에는 부학생회장이 권한을 대행하며 이하 순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기구에서 결정한다.
-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학생회장의 임기는 전임 학생회장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## 제10장 재정

#### 제52조(회계 연도)

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#### 제53조(재정)

- ①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 및 기타 수익으로 충당한다.
- ② 본회의 재정은 회계를 소관하는 집행국장이 일임한다.
- ③ 본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계좌개설은 회계를 소관하는 집행국장이 담당한다.

#### 제54조(예·결산공고)

본회의 예·결산공고는 한 학기 단위로 한다.

#### 제55조(예산편성)

- ① 집행국의 협의를 통해 편성된 예산은 해당학기 단학대회에서 심의를 받는다.
- ②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지출해야할 경우 단운위의 2/3 이상의 동의를 통한 의결로 허가를 받아 진행한다.

#### 제56조(결산보고)

- ① 본회의 결산은 단학대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는다.
- ② 필요 시, 매월 말 단운위의 제안으로 결산 보고서를 공고할 수 있다.
- ③ 본회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, 학생회장은 재정 상태를 공개하여야 한다.
- ④ 본회 회원에 의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, 그 건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진행한다. (단, 특별 감사는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온라인으로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.)

#### 제57조(기타 수익)

- ① 기타 수익은 학생회의 각종 수익사업, 기부금 등 불특정 다수에 의해 발생한 수익금 일컫는다.
- ② 기타 수익은 수익 발생이 완전히 종료된 시점에 회계장부에 기록한다.

③ 기타 수익의 발생 시점부터 회계장부에 기록되는 시점까지 발생한 세부적인 수익과 지출은 결산 공고 시 공고해야 한다.

## 제11장 학생회칙 개정

### 제58조(발의)

회칙개정안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발의할 수 있다.

1. 단운위 2/3 이상의 동의
2. 본회의 회원 1/10 이상의 연서
3. 단학대회 재적 대표자 1/2 이상의 동의

### 제59조(공고)

단학대회 의장은 회칙개정안을 최소 단학대회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

### 제60조(의결)

- ① 학생회칙 개정안은 단학대회에서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학생회칙을 전면 개정할 때는 단학대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투표에 부칠 수 있다.

### 제61조(공포)

개정된 회칙은 개정일 포함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.

## 제12장 비상대책위원회

### 제62조(정의)

비상대책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인 선거기간에 선거가 무산되어서 본회의 정.부학생회장이 선출되지 않았거나 정.부학생회장의 사퇴 혹은 탄핵으로 인한 궐위 시 단운위에 준하여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.

### 제63조(구성)

구성원은 본회의 학생회칙 제5장의 구성에 준하여 구성되나 정.부학생회장은 구성원에서 제외한다.

### 제64조(업무 및 권한)

본회의 학생회칙 제5장에 언급된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.

### 제65조(소집 및 의결)

본회의 학생회칙 제5장 단과대운영위원회에 언급된 것과 같은 절차로 소집 및 의결을 진행하나 비상대책위원장이 소집한다.

### 제66조(해산)

본 위원회는 일시적인 성격의 기구로 보궐선거가 이뤄져 정.부학생회장이 선발되거나 궐위된 정.부학생회장의 임기가 끝나면 해산한다.

## 제13장 비상대책위원장

### 제67조(정의)

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위원회의 대표이다.

### 제68조(선출)

- ①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후 비상대책위원 중 한명을 비상대책위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.
- ②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재적인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한다. 2인 이상의 후보가 나온 경우 과반 득표자가 선출된다.(단, 최다 득표수가 과반이 되지 못할 경우 최저 득표자를 제외하고 재투표를 실시하고,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재투표한다.)

### 제69조(업무 및 권한)

제6장에 명시된 업무 및 권한과 기타 사범대학 학생회칙에 명시된 정.부학생회장의 업무를 할 수 있다. 하지만 그 업무와 권한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고,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그 업무 및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.

## 제14장 인수위원회

### 제70조(정의)

인수위원회는 사범대학 학생회장직의 인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이다.

### 제71조(구성)

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위원들로 구성되며 사범대학 학생회장 당선인이 임명한다.

#### 제72조(업무 및 권한)

사범대학 학생회장 당선인이 당선된 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존속할 수 있으며, 학생회의 조직, 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, 새 학생회의 방향성 및 가치관을 설정하기 위한 준비, 그 밖에 사범대학 학생회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#### 제73조(해산)

본 위원회는 일시적인 성격의 기구로 정.부학생회장의 임기가 끝나면 해산한다.

### 제15장 사범대학 학생회장 당선인

#### 제74조(정의)

사범대학 학생회장 선거에서 사범대학 학생들의 투표로 선출된 당선인이다.

#### 제75조(지위와 권한)

① 사범대학 학생회장 당선인은 사범대학 학생회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사범대학 학생회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.

② 사범대학 학생회장 당선인은 이 회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범대학 학생회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.

### 제16장 인수위원회

#### 제76조(정의)

인수위원회의 대표이며, 사범대학 부학생회장 당선인을 지칭한다.

#### 제77조(역할)

인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사범대학 학생회장 당선인을 보좌한다.

### 부칙

#### 제1조

본 회칙은 단학대회에 의하여 제정되며 3일 이내에 학생회장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. 그 효력은 97년 회계 연도부터 실시, 적용되며 다음 회칙이 제정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.

#### 제2조

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은 단운위의 의결에 따른다.

#### 제3조

본 회칙 이전 학생회장은 그대로 유임된다.

#### 제4조

국가재난, 천재지변, 감염병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본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본 회칙에 상충되는 부분이 생기더라도 단운위의 의결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회칙을 변경하여 본 회를 운영할 수 있다.